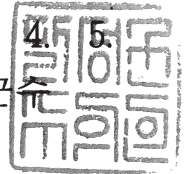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8

제출일자 : 2021.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제7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안 제1조 및 제5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2조)
- 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반영(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2021. 3. 8. - 2021. 3. 28. (21일간)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를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을 “이란 흡연자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으로,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 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10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5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 ----- -----. 3.-----이란 흡연자가 ----- -----. 4.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5항에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국민건강증진법」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 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 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 (생 략) 제11조 ~ 제15조 (생 략)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 항----- ----- ----- 수 ----- ----- -----. 1. · 2. (현행과 같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 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 역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0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 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

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시행일 : 2018. 7. 1.] 제9조제4항제24호

[시행일 : 2018. 12. 31.] 제9조제6항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